

의안번호	2204642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12. 17.
추계번호	24D429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중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0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7억 6,100만원 등 향후 10년간 총 913억 200만원(연평균 91억 3,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위원회의 재구성 및 존속기한 연장	14,761	14,879	15,000	6,277	6,402	91,302	9,130
	2031	2032	2033	2034	2035		
	6,530	6,661	6,794	6,930	7,068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수 및 지급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위로금) 제1항	-위로금 지급대상에 국외뿐만이 아닌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포함 (현행) 국외강제동원자 → (개정안) 강제동원자	의무규정
2	안 제4조(위로금) 제2항	-국가는 강제동원생환자(귀환 후 사망자 및 귀환후 생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3	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¹⁾ 지원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신설)	재량규정
4	안 제6조(의료지원금)	-의료지원금 대상에 국외뿐만이 아닌 국내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내강제동원 생환자도 포함하여,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무규정

5	안 제8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 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및 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9조) · 존속기한: (현행) 2015년 6월 30일까지 → (개정안)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 연장: (현행) 6개월 이내 → 3년 이내	의무규정
6	안 제23조의2(유전자검사)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1항),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서 제출 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위로금) 제1항	○	-
2	안 제4조(위로금) 제2항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된 인원은 188,373명이나, 강제동원 생환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3	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	개정안은 미수금 지원금 산정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 ²⁾ 은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

1) 현행법 제5조(정의)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로 발생할 미수금 지원 금액, 물가 상승률 반영 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안 제6조(의료지원금)	×	개정안은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중 생존자 또는 국내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대상자 중에서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현시점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료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대일항쟁기강제동원 관련 생존자는 1,000명 미만이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임
5	안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왜곡 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및 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6	안 제23조의2(유전자검사)	×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됨 다만,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본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의료기관 외에도 일반 민간기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비용이 다르므로 현시점에서 유전자 검사대상의 수, 위탁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 2) 현행법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로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의 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의결한 대상자 수로 가정
-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2010.3.~2015.12.)의 평균 운영경비를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³⁾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중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과 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 경비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

가.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의 수에 희생자 유형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기간(2010.3.~2015.12.)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건은 1,505건임

[표 2]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현황

(단위: 명)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CPI)	2.5	2.1	2.0	2.0	2.0	2.0	2.0

사망	행방불명	후유장해
1,059	165	281

주. 2024년 9월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현행법⁴⁾에 따르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위로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기지급된 위로금 지급 현황은 [표 3]과 같음
- 사망·행방불명: 1인당 2천만원,
 - 부상자: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표 3]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합 계		사망·행방불명		부상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31,873	462,258	17,880	360,073	13,993	102,18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지급할 위로금 중 부상자의 지급단가는 2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장해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자의 위로금 지급 평균 단가인 730만원⁵⁾을 준용함
- 안 제33조⁶⁾에 따르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위로금 지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4) 현행법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102,185백만원/ 13,993명

6) 안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자 1,224명은 3년간 연간 408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자(후유장해) 281명은 2026년 94명, 2027년 94명, 2028년 93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위로금 지급단가인 사망·행방불명자 2천만원, 부상자 730만원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였을 때, 추가재정소요로 265억 3,8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	2027	2028	합계
사망·행방 불명자	대상자(A, 명)	408	408	408	1,224
	지급단가 (B, 백만원)	20	20	20	—
	소계 (C=A×B, 백만원)	8,160	8,160	8,160	24,480
부상자	대상자(D, 명)	94	94	93	281
	지급단가 (E, 백만원)	7.3	7.3	7.3	—
	소계 (F=D×E, 백만원)	686	686	686	2,058
추가재정소요 (G=C+F, 백만원)		8,846	8,846	8,846	26,538

주. 대상자 및 지급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위원회 재구성 및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경비

□ 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존속기한을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위원회가 운

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 경비를 추계

-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설치되어 2015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연평균 59억 1,500만원을 집행함

[표 5] 연도별 위원회 결산 현황: 2010~201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인건비	3,092	3,022	2,886	2,663	2,384	2,485	2,755
위원회 운영 경비	3,061	4,254	3,725	3,293	2,686	1,938	3,160
합 계	6,153	7,276	6,611	5,956	5,070	4,423	5,915

자료: 행정안전부 결산 사업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10년 연장될 경우의 운영 경비는 2010~2015년의 위원회 운영 경비의 평균 집행액인 59억 1,500만원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0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총 647억 6,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위원회의 재구성(안 제8조)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9조)	5,915	6,033	6,154	6,277	6,402	64,764
	2031	2032	2033	2034	2035	
	6,530	6,661	6,794	6,930	7,0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중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0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7억 6,100만원 등 향후 10년간 총 913억 200만원(연평균 91억 3,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위원회의 재구성 및 존속기한 연장	14,761	14,879	15,000	6,277	6,402	91,302	9,130
	2031	2032	2033	2034	2035		
	6,530	6,661	6,794	6,930	7,068		

주. 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수 및 지급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